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597
----------	-------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제출) 일자	심사경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019호)	인요한의원	2024.9.13.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1.1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110호)	이종배의원	2025.3.1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5. 11. 11.자로 직접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372호)	김기표의원	2025.8.2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5. 11. 11.자로 직접 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19.)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

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형법은 사기죄의 최고형을 징역 10년, 벌금 2천만원 이하로 규정하여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최고형은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음.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정형에 따른 경우 사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집단적·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함(안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7조(사기)

제3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의2 중 “10년”을 “20년”으로 하고,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348조제1항 중 “10년”을 “20년”으로 하고,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47條(詐欺) ① 사람을 欺罔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 以下の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② (생 략)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u>10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u>10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 ----- ----- ----- ----- ----- ----- 20년 ----- ----- 5천만원 ----- -----. 제348조(준사기) ① ----- ----- ----- ----- ----- 20년 ----- --- 5천만원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